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15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한상화 의원, 윤명수 의원, 전영옥 의원

1. 개정이유

❍ 당진시 관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지원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의 카시트 선택사항을 지원 내용에 맞게 구체화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나.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해당 서식을 동일하게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2025.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당진시자체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진시 자체 서비스	출생지원금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육아용품 교환권		□ 신생아 이름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 신청물품(택1) : 영유아카시트 []순성 []다이치(시즌1) []다이치(시즌2)(예약) 주니어카시트 []순성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순성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 다태아 이상
	자녀3명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당진시자체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진시 자체 서비스	출생지원금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육아용품 교환권		□ 신생아 이름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 신청물품(택1) : 영유아카시트 []순성 []다이치(시즌1) []다이치(시즌2)(예약) 주니어카시트 []순성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순성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 다태아 이상
	자녀3명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한상화 의원**

❍ 제안이유

- 당진시 관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지원종류가 다양화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Ⅱ 주요내용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의 카시트 선택사항을 지원 내용에 맞게 구체화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서식을 동일하게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건으로 시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함으로 사업수혜자에게 신청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용품 신청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붙임 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5A충남당진001) **【붙임 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01			
정 책 명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지한	전화번호	041-350-32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한상화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당진시자체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진시 자체 서비스	출생지원금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육아용품 교환권		□ 신생아 이름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 신청물품(택1) : 영유아카시트 []순성 []다이치(시즌1) []다이치(시즌2)(예약) 주니어카시트 []순성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순성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 다태아 이상
	자녀3명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당진시자체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진시 자체 서비스	출생지원금		□ 신생아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이름 : □ 거주기간 :
	육아용품 교환권		□ 신생아 이름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 신청물품(택1) : 영유아카시트 []순성 []다이치(시즌1) []다이치(시즌2)(예약) 주니어카시트 []순성 []다이치 휴대용카시트 []순성 []다이치 □ 물품수령지 :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 다태아 이상
	자녀3명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고객명 : □ 고객번호 : ※문의:수도과(360-6462)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16호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 김봉균 의원, 김명진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그 유형과 양태 역시 매우 다양화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교사・학생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되고, 지난 9월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부여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무한대・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진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시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둠 (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둠 (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둠 (안 제7조)

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024A충남당진136)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관련 시책 과제와 추진 방법
3.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집행계획
4.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정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일상 회복 지원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및 보호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시·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36			
정 책 명	**당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이수정	전화번호	041-350-36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당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모르겠음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여성가족과장 귀하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 예산(예방 캠페인 및 홍보)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예산(법률자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사업	예산	비고
계	4,125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 (캠페인 및 홍보)	3,460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	665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박노문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김봉균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지난 9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부여됨
 -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진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둠 (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둠 (안 제6조)

❍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근거를 둠 (안 제7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함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여성가족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 본 제정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그 피해가 무한대·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붙임 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 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4A충남당진136)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3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 · 홍보

3.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 · 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 · 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 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 · 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4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17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최연숙 의원, 박명우 의원, 김명진 의원, 김선호 의원

1. 제정이유

❍ 장애인은 인지·대응능력 부족으로 학대·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사례는 증가('22년 1,186건 ⇒ '23년 1,418건)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21년 2건 ⇒ '24년 5건) 및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료에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거주시설, 신고전화번호의 게시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둠(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9조의4, 제59조의10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2025.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인 보호 사업
3. 피해장애인 분리조치 및 임시거주 지원
4. 피해장애인 치료·상담·법률 지원 사업
5. 장애인학대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에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같은 법 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전화번호의 당진시 청사 게시 상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 발의의원: **최연숙 의원**

❍ 제안이유

- 장애인은 인지·대응능력 부족으로 학대·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종류를 규정함. (안 제4조)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

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규정함. (안 제5조)

❍ 장애인거주시설 및 신고전화번호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안 제6조)

❍ 협력체계구축 근거를 둠. (안 제7조)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해당 범죄의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경로장애인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검토 필요

- 본 제정 조례안은 점점 늘어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타당함.
- 다만, 안 제8조 제2항의 보상금은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일부 검토 필요

-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안 제8조의 보상금 지급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8조(보상금)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거나, 해당 범죄의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상금)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거나, 해당 범죄의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붙임 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 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4A충남당진130)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 · 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 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 · 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

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 및 교육자료제작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사회복지과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노인 위기 지원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사업 시행 중이며, 모든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 성립 불필요
- 자치행정과 '도담도담' 행정지원 사업안내 책자의 제작 예산을 참고하였으며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자료 제작비용 연간 9,000,000원(4,500,000원 * 2회)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30			
정 책 명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김현진	전화번호	041-350-33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이 지원을 위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최연숙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인 보호 사업
3. 피해장애인 분리조치 및 임시거주 지원 및 보호시설 설치
4. 피해장애인 치료·상담·법률 지원 사업
5. 장애인학대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에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같은 법 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전화번호의 당진시 청사 게시 상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거나, 해당 범죄의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18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최연숙 의원, 김선호 의원,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당진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인력,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6조~제7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제9조)

마. 회의 등, 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세칙(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예산조치 : 5년간 421,545천원(비용추계서 첨부)[붙임 2]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있음(2024A충남당진131)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 .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름과 주소 및 관할구역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과 같다.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생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강과 관련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진시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며,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해촉,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건강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 비 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추진 비용
- 안 제11조, 제13조 회의에 따른 수당 등 비용

○ **관련조문** : 제5조(업무 및 기능등)

❑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지원

제11조(회의 등) ①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심의할 수 있다.

④ 지역건강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역건강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42,389천원

- 인건비(일시사역) : 92천원×1명×14회 = 1,301천원

**당진시 생활임금기준으로 책정*

- 운영비 : 1,035천원×12개월 = 12,420천원

** 사무용품, 위생소모품, 방역소독, 시설고장수리비, 수유실관리 등*

-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 550천원×12개월 = 6,600천원

** 현수막, 배너, 교육자료 제작, 홍보물품구입 등*

- 사업운영비 : 1,589천원×12개월 =19,068천원

** 영양관리 프로그램 요리실습재료 및 실습실 물품구입, 행사비 등*

- 운동기구 수리·유지비 : 300천원×10대×1회 = 3,000천원

② 주민건강동아리 관련비용 150천원×4회 = 600천원

③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 만성질환영양교육 프로그램 90천원×2명×40회 = 7,200천원

- 비만관리영양교육 프로그램 120천원×1명×40회 = 5,200천원

- 노인대상 프로그램 60천원×2명×30회 = 3,600천원
- 우울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100천원×1명×20회 = 2,000천원
- 다이어트댄스 프로그램 70천원×2명×40회 = 5,600천원
- 요가 프로그램 70천원×2명×40회 = 5,600천원
- 필라테스 프로그램 70천원×2명×40회 = 5,600천원
- 동아리 걷쥬 프로그램 432천원×10개월 = 4,320천원

④ 만성질환자 기초검사지 구입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

⑤ 자산 및 물품구입 1,000천원 ×1대 = 1,000천원

※ 추계기간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후 사업시행 시점 기준 5개년으로 함

※ 추계에 사용한 가정·방법 : 사업시행 시작 연도(2025년) 기준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출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42,389	42,389	42,389	42,389	42,389	211,945
	주민건강동아리운영관련	600	600	600	600	600	3,000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9,120	39,120	39,120	39,120	39,120	195,600
	만성질환자 기초검사지구입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자산 및 물품구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세입	자체재원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보조재원						
	소계	85,309	85,309	85,309	85,309	85,309	421,545
총 비용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특별회계						
	농어업발전기금						
민간							
기타							
합계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42,389	42,389	42,389	42,389	42,389	211,945
주민건강동아리운영관련		600	600	600	600	600	3,000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9,120	39,120	39,120	39,120	39,120	195,600
만성질환자 기초검사자구입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자산 및 물품구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 출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42,389	42,389	42,389	42,389	42,389	211,945
주민건강동아리운영관련		600	600	600	600	600	3,000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9,120	39,120	39,120	39,120	39,120	195,600
만성질환자 기초검사자구입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자산 및 물품구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지방세	84,309	84,309	84,309	84,309	84,309	421,545
	세외수입						
지방채							
농어업발전기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4.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4A충남당진133</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당진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건강증진과</td></tr>
<tr><td>담당자명</td><td>이희선</td><td>전화번호</td><td>041-360-3081</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4년 12월 19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td><td colspan="4">*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모르겠음 / 1-3 : 모르겠음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td></tr>
<tr><td rowspan="3">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성별영향평가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td></tr>
<tr><td colspan="4"><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td><td>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td><td>‘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성별영향평가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td></tr>
</table></td></tr>
</table>

		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최연숙 의원**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당진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Ⅱ 주요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인력,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 회의 등 운영세칙,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명시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있는 본 안은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수정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붙임 1]

❍ 예산조치: 5년간 421,545천원(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있음 (2024A충남당진131)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19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농어업 종사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 중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행 근거 둠(안 제4조)

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근거를 둠(안 제7조)

바. 사업 수행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검사·점검 근거를 둠(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2025.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
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작업지원단)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 및 육성할 수 있다.

제8조(검사·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윤명수 의원**

❍ 제정이유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농어업 종사 인력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어업 고용인력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농어촌 인력 지원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시책 수립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둠. (안 제4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5조)

❍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6조)

❍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 근거를 둠. (안 제7조)

❍ 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검사·점검 근거를 둠.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농업정책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 종사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어업 고용인력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리 시내 원활한 농어업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안으로써,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붙임 1]**

❍ 예산조치: 5년간 12,133,000천원 **[붙임 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A충남당진129)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 업종별 · 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 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안정적 활용을 위한 사업 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6.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작업지원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어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지원에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2,133,000	3,386,600	3,386,600	1,786,600	1,786,600	1,786,600
국 비	1,350,000	472,500	472,500	135,000	135,000	135,000
도 비	1,873,050	435,360	435,360	334,110	334,110	334,110
시 비	7,108,450	2,118,440	2,118,440	957,190	957,190	957,190
기 타 (자부담)	1,801,500	360,300	360,300	360,300	360,300	360,3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지원 및 자체수입(지방세 등)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경제국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3,386,600**	**3,386,600**	**1,786,600**	**1,786,600**	**1,786,600**	**12,133,000**
국도비 보조금	907,860	907,860	469,110	469,110	469,110	3,223,050
자체수입	2,118,440	2,118,440	957,190	957,190	957,190	7,108,450
기타(민자)	360,300	360,300	360,300	360,300	360,300	1,801,500
세 출	**3,386,600**	**3,386,600**	**1,786,600**	**1,786,600**	**1,786,600**	**12,133,00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690,000
공공형계절 근로사업	374,000	374,000	374,000	374,000	374,000	1,870,00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1,600,000	1,600,000	-	-	-	3,200,000
농작업지원단 육성 사업		1,201,000	1,201,000	1,201,000	1,201,000	1,201,000	6,005,000
농촌일손돕기 지원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재원 조달		**3,386,600**	**3,386,600**	**1,786,600**	**1,786,600**	**1,786,600**	**12,133,000**
의존 재원	소 계	907,850	907,850	469,100	469,100	469,100	3,223,000
	보조금	907,850	907,850	469,100	469,100	469,100	3,22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57,200	2,118,450	957,200	957,200	957,200	5,947,250
	지방세	957,200	2,118,450	957,200	957,200	957,200	5,947,250
	세외수입						
지방채		1,161,250					1,161,250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60,300	360,300	360,300	360,300	360,300	1,801,50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29			
정 책 명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박현철	전화번호	041-3504-414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농업정책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윤명수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 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

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6.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농작업지원단)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작

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검사·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20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김선호 의원. 윤명수 의원, 전선아 의원

1. 개정이유

❍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별지 서식(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이 누락된 바, 이를 조례의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 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2025.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대급”을 “농산물대금”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벼”를 “품목”으로, “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휴대전화

○ 신청내역

품목 재배면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 포대 · BOX · 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수 량 (kg 포대·BOX·망)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24.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당진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급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벼 재배면적(㎡),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1. (현행과 같음) 2. 품목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선호 의원**

❍ 제안이유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당진시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Ⅱ 주요내용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 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4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서식)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농업정책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검토 필요

-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별지 서식(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이 누락되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가 부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본 개정안은 기존 시행 조례에 사업신청에 관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앞서 기술한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계획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안 제4조 및 별지 서식에서 사용된 용어가 현재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개정안은 별지 사업신청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소득으로 경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고 조례 내 법적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급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 · 수량, 농산물선지급제 희망량 [별지서식]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u>대금</u>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 · 수량, <u>농산물대금 선지급제</u> 희망량 [별지서식]	- 오타 수정 및 사업명칭 일치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 신청내역 - 월급제 희망량	○ 신청내역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 사업명칭 일치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4A충남당진131) [붙임 1]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31			
정 책 명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김영빈	전화번호	041-350-41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농업정책과장 귀하

붙임2 **의원발의 조례안(김선호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벼”를 “농산물”로, “월급제”를 “농산물선지급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휴대전화

○ 신청내역

품목 재배면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 포대 · BOX · 망)	월급제 희망량	
			수 량 (kg 포대 · BOX · 망)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24.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당진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급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벼 재배면적(㎡),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4조(지원신청) ---------- ---------- ---------- -------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 ---------- -----. 1. (현행과 같음) 2. 농산물 ---------- ---------- 농산물선지급제 ---------- ----------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덕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1821호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 김덕주의원, 김명회의원, 김선호의원, 전선아의원

1. 제정이유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안 제5조)
❍ 재정 지원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합　　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보조금 심의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당진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6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스마트도시과장 장윤성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34			
정 책 명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명	장윤성	전화번호	041-3504-44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도시과)	*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스마트도시과장 귀하

붙임3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발의의원: **김덕주 의원**
- 제안이유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Ⅱ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안 제5조)
- 재정 지원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스마트도시과) 종합의견**: 제정 타당

- 본 조례 제정안은 다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제정 적법

- 본 조례 제정안은 현수막의 제작을 재활용 소재나 분해가 쉬운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현수막의 재사용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안으로써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붙임 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4A충남당진134) **【붙임 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22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9일

발 의 자: 전영옥 의원, 최연숙 의원, 박명우 의원, 김명진 의원, 김덕주 의원

1. 개정이유

❍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23. 6.)한 바 있음

❍ 조례 개정으로 무질서한 토지분할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데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이나 교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발생하였음

❍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공익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라목)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1. . ~ 2025. 1.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이며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할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할 것 (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분할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허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이며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할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할 것 (4)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 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분할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허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전영옥 의원**

❍ 제안이유

-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 분할을 제할할 수 있도록 한 지난 조례 개정으로 무질서한 토지분할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으나,
-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나 교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이를 허가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 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Ⅱ 주요내용

❍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라목)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스마트도시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나 교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분할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함

(※ 주택개발과 개발허가팀 의견 반영)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통한 예외사항을 만들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써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A충남당진135) **【붙임 1】**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당진135			
정 책 명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명	박정래	전화번호	041-350-44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도시과)	*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스마트도시과장 귀하

붙임2 **의원발의 조례안(전영옥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라.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이며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할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분할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허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라.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이며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할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4)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분할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허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